

르시기를 그들이 그의 말로 믿지 못 하겠으면 그의 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다. 우리 또한 진리와 사랑을 나타냄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아울러 우리의 행위들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도 서

- De Jong, Peter Y. *The Ministry of Mercy*. Baker Press, 1952
- Huls, Albert. *The Christian Religion as Service*. Th. M. thesis at Westminster Seminary, 1959
- eds. McCord and Parker. *Service in Christ*. Wm. B. Eerdmans, 1966
- Schweitzer, Edvard. *Church Order in the New Testament*. Naperville: Allenson, 1961 *Amended Version of the Form of Government of the O. P. C.*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Guardian
- March, 72 On the change of name of Committee on General Benevolences
- Aug/Sep '72 same subject
- Aug/Sep '72 Albert Edwards, "To Whom Do We Show Mercy?"
- June/July '73 "Diaconal Ministries"
- Oct '73 "Was Phoebe a Deacon?"
- Jan '74 Rollin Keller, p.16
- June/July '74 Lawrence Eyres on the Elder (concerning deacons, too)
- VISITO, POTO, CIBO, REDIMO, TEGO, COLLIGO, CONDO, CONSULE, CASTIGA, SOLARE, REMITTE, FER, ORA
- "아픈자를 방문하고 목마른자에게 물을 주며, 배고픈이에게 먹이며, 죄인을 보살피고, 벗은자를 입히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죽은이를 묻어 주라"
- "당황하는 자를 응고하며, 죄인을 바로잡고 슬피하는 자를 위로하며 해치는 자를 용서하고, 성가신 이를 참아주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이것은 Alexander of Hales, Albertus Magnus, Bonaventura Aquinas와 Aquinas에 의해 인용된 암송 구절인데 두번째 줄의 "consule"을 무지한자를 가르치며'와 '당황하는 자를 응고하며'로 나누어 두줄 다 일곱부분으로 하였다).
- G. Barrois의 *Service in Christ*에서 "On Medieval Charities"를 참고.

## 교수직 (Doctorum Munus)에 대한

### 칼빈의 견해

#### 박 종 칠

(고신대학 강사)

- I. 문제점들
- II. 敎會內에 가르치는 職分
- III. 칼빈의 교사직 理解를 위한 자료들
- IV. 칼빈의 교사직에 대한 스트라스버그에서의 영향 (1538-1541)
- V.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교사직에 대한 견해
- VI. 교사직과 제네바 학원
- VII. 제네바 敎회의 교수들
- VIII. 敎회안의 교수직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기초

#### I. 문제점들

시대가 細分化 되어 감에 따라 여러면에서 전문적 교사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전문분야의 교사들이 敎會 또는 敎會에서 어떠한 위치로 어떻게 기능을 발휘해서 공공 봉사직을 더욱 생산적으로 이룰 것인가를 재평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敎會內에서 가르치는 職分이 어떠한 위치에서 또한 어떠한 기능으로 주님의 몸된 敎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할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基督信者에게는 무엇보다 時代潮流에 따라 가르치는 職分이 어떤 위치에 서야 할까 보다는, 계시된 말씀에서

이 職分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후자의 입장이 前者의 時代的 흐름에 대해 성경적 구체적 적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근래 우리 教會 안에서 많이 변화한 경험들 중에서 神學教授職은 教會의 奉仕職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그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라는 教會의 요망인 것을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뚜렷한 구분에서 벗어나 하나의 유기적 관계가 어떻게 구체적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관심하는 바이다. 또 한가지는 우리 신학대학도 학과 증설이 허락되어 基督教教育學科와 宗教音樂科며 醫豫科도 생기게 되어 금년부터는 신학과학생들과 거의 같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教育學士와 音樂士 내지 碩士까지 취득한 학생들이 배출되는 수준높은 학교가 된 것이다. 이들이 졸업후에 주님께 부름받아 동일한 教會(구체적으로는 우리 교단안에서)내에서 일하게 될 때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人格의 대우를 받을 것인가? 謔教라는 거룩한 봉사 때문에 같은 동역의 수고로서 宗教教育하는 職(혹은 찬양지휘자 職)과는 구별되어 봉급을 더 받아야 되는가? 이것은 특별히 존경의 대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은 우리 교회들의 미래에 더욱 절실한 당면 문제들이 될 것이며 教會內的 職分들과 奉仕기능에 대한 상호관련성에 더욱 생산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줄 안다.

또한 문교부 인가로 이땅 위에서 우리가 몇몇이 설 위치가 주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市政의 관심이 우리 교회 組職과 신앙에 언제나 일치내지 밀착될 것인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교사직에 대한 一考에 앞서 그럼 성경말씀이 주장하는 교회직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자. 역사적으로 주요 교회들 간에 異見을 나타내고 있다. 어떤 교파에서는 성경에는 오직 두 가지 직분—목사(장르도 목사직에 대한 다른 명칭)와 집사—만 있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교파에서는 목사, 장르, 집사만이 성경이 가르치는 職分이라고 하기도 하며, 또 다른 교파에서는 목사, 교사(교수), 장르, 집사직들이 하나님께서 制定하신 직들(Jus Divinum)이라고 한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의 여러 층계의 사제주의적 교권주의가 있다. 이렇게 교회직들의 數와 性格에 대한 각이한 이해가 교회의 연합에 지장을 주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교회연합이란 교리적 동질성은 물론 여기에 기초한 같은 행정적 구조를 가질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오순절운동이라는 범교단적 教會運動이 일어나 어떤 職分에 대하여 인물을 동일시 하는 교권주의에 反對하여 성령의 은사를 강조한 나머지 職分에 대한 개념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어떤 위치에서도 무슨일이든 할 수 있다는 民主的 정신을 결부시키면서 이들은 초대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한다. 民主政治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백성의 大愆를 모우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이것 역시 성경적 견해가 되지 못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 H. Bavink는 民主的 長老教會조직이 초대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곧장 單一 감독제로 이전된 데는 3가지 原因이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교회들이 처음에 특수직(사도, 복음전도사, 선지자)과 보통직(감독, 집사)과의 뚜렷한 구분이 없었을 때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 한 감독의 職에 복음전도사, 선지자직, 교사직의 활동이 계속되어 버리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둘째, 순수복음의 바울사상인 以信得義의 敎理가 도덕적 율법주의로 변하자 직책을 하나님의 계시기관의 자리로 올려 놓게 되었다는 것이며

셋째, 여러 이단 종파가 일어나자 기독교회는 결속을 위하여 참된 교회는 전체를 포함하는 보편교회에 있으며 여기에서 감독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sup>1)</sup>

이런 생각들은 어디까지나 가능한 추측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教會史가 보여주는 것은 성경적 職分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改革運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여준다.

1) H. Bavink, *Gereformeerde Dogmatiek* IV, 1967, pp. 320—21.

## II. 教會內的 가르치는 職分

지금 필자가 관심하는 바는 教會內에서 가르치는 職分에 대한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칼빈의 가르치는 職分에 대한 이해를 살펴 보려 한다.

일찌기 O. Noordmans는 칼빈의 직분에 대한 견해를 고찰하기 이전에 그의 공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칼빈의 성경주의는 하나의 세계역사의 힘을 가지고 있어 서구 유럽의 生活에 그 형태를 주었던 창조적 힘을 주었다, 이러한 주의의 意味가 每歷史마다 일어나지도 아니하였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주석처럼 그 차지 하는 위치 대로 全 역사의 서적들이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장기 놀이에 비하면 칼빈의 직분론이라는 줄경이가 로마 카톨릭의 교황 장군을 물리친 셈이다. 그러나 직분론의 바른 이해가 교회 성격을 바꾼 획기적 사실이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직분에 대한 이해가 시대적으로 그렇게 명료하게 되어온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리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화란 31조와 자유 개혁파교회는 칼빈의 전통을 받아 教會內에서 4職을 하나님의 법(Jus Divinum)으로 믿고 그들의 教會政治 2조에서도 그렇게 고백했다. “봉사직들은 4가지이니 말씀을 섬기는 자들, 교수, 장로, 집사의 섬기는 자이다.” 그러나 Groningen-Zuid 총회(1978)에서 教會政治를 수정 제안하는 가운데 2조 역시 수정 제안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구별할 세 職分이 있다. 곧 말씀 봉사의 직, 장로의 직과 집사의 직이다. 어떤 說教者들은 교육을 위한 말씀봉사로 다른 이는 선교의 일을 위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전의 고백문과 지금의 그것과의 차이는 전에는 4職인데 지금은 교수직이 빠진 3職 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sup>2)</sup> 말씀의 봉사자의 형태에 교수와 선교사가 있다고 한다. 이런 결정 배후에는 칼빈의 이해에서부터 H.

바빙크<sup>3)</sup>와 G. 두케스와 같은 신학자들의 연구결과<sup>4)</sup>로 이룩된 결론인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화란 自由改革派教會는 우리의 한국長老敎職分에 대한 웨스트민스터적 理解와 가까운 형태가 된 것이다.

칼빈은 그의 基督教講要에서 목사, 장로, 집사의 職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교사(doctors)란 말은 의술을 가진자에게 사용되어져서 學的 分野에서만 인정된 것 같지만,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로 관계된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성경주의적으로 그 시대와 호홉하고 相適하는 가운데 칼빈은 가르치는 직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제베바에서 나온 교회조직(Ordonnances Ecclesiastiques, 1541年 11月20)과 그의 마지막 라틴어판 基督教講要(1559)에서는 가르치는 職分을 교회봉사직의 하나로 분명히 간주하면서 四職을 칼빈은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칼빈의 후예들은 이 전통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입장을 보여 주지 않는 것 같다. 예컨대 Heinrich Heppe는 그의 敎義學<sup>5)</sup>에서 17, 8 세기의 유럽大陸의 改革主義 주석가들은 칼빈의 4職에 대한 견해를 지지하지 아니 했다고 지적하고는 Heppe 자신의 입장은 이 문제에 확연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sup>6)</sup> 바빙크는 敎師職(Doctoranambt)에 대해 이것이 教會와 독립한 신학교수의 직책인지 아니면 使徒的 設立인지에 대해서 異見이 있다고 前提하고 이 가르치는 職은 사도적 기구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Van geen apostolische instelling) 교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sup>7)</sup>

이 두 학자들의 見解에 얼마만큼 공정한 객관적 자료들이 수집되어 결론을 내렸는지 未知數이지만 필자가 이 가르치는 職에 대해 관심하게 된 데는 더욱 실제적인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

(1) 우리교회는 교세확장에 있어서 카리스마적 복음전도와 敎育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아가며,

3) *Het Dectorenambt*, Kampen 1899, *Gereformende Dogmatiek* IV, p. 370.

4) G. Doekes, *Het kerkelijk Doctorenambt*, J.H. Kok, Kampen, 1917.

5) Heinrich Heppe, *Reformed Dogmatics* (London, 1980).

6) *Ibid.*, pp. 676—680.

7) Bavink, *ibid.* IV p. 370.

(2) 고등교육과 목사수련에 특히 교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3) 고등교육은 수련을 제공하는데 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교육받은 자에 대해 어떤 책임 意識을 갖고 職位本位의 의미에서 봉사문호를 개방해야 할 경향이며.

(4) 지금껏 교회가 할수 없었다는 부분적 이유 때문에 교회 밖에서 훈련받은 여러 운동, 학문이, 이제 교회가 중성적으로 그것들을 용납하자, 적어도 人事 問題에 교회에 문제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경향이며.

(5) 그리고 개혁주의적 청교도 전통은 교육에 대해 강조한 나머지 목사직은 물론 가르치는 직을 병행해 왔다는 점들이다.

필자는 이런 문제들에 답을 주는 것보다 우선 가르치는 職에 대한 역사적 관찰을 해 보자는 것이다.

### Ⅲ. 칼빈의 교사직 이해를 위한 자료들

칼빈의 봉사(Ministry)에 대한 구조를 나타내는 서너가지 자료가 있다. 첫째, 1937년 1월 16일에 나온 Articles concernant l'organisation de l'Eglise et du Culte a'Genève인데 여기서는 대략 4가지 대요가 나오는데 성찬식, 공중예배, 젊은 이를 위한 가르침, 결혼법의 개혁이다. 이 논문에는 공공 봉사직에 대한 말이 오직 하나 곧 "말씀의 섬기는 자들"만 언급 되어 있어, les anciens와 les docteurs의 후기발전의 표상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때에 집사직에 대해서는 완전히 언급이 없다.

둘째, 1538-1541년의 스트라스부그의 생활 후 제네바로 돌아온 후 칼빈과 그의 동료들은 교회조직 구상을 시 의회의 재가를 얻어 완성했다. 이것이 1541년 11월 20일에 제출된 Ordonnances Ecclésiastiques(1561년 5월에 크게 개정됨)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개혁주의 교회의 4가지 公共奉仕職이 나온다. "우리주님이 그의 教會政治를 위해 設立한 4가지 직책들이 있는데 첫째는 牧師요, 그 다음은 教師요, 그 다음은 長老요 마지막은 執事다."라고 하였다. 목사직에 대해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 그 직책의 가

능, 의무, 자격 조건들에 대해 말하면서 試驗, 任命, 就任의 3구분을 나누어 실제 담임목사가 되는 때까지 설명한다.

시험은 후보생의 敎理와 生活은 물론 그의 學的 能力을 테스트 하기 위하여 익명의 기관에서 실행하고 있다. 누가 이 후보생 시험을 치를 것인가는 역사적으로 개혁주의 교회에서 논쟁이 있어 왔다. 화란교회와 스코트랜드교회에서는 王政의 參見이 있었다. 敎理試驗은 성경지식의 넓이와 깊이를 알아보며 이 후보생이 이 지식을 "백성을 세우는데" 얼마만큼 잘 적용할 수 있는지의 능력문제를 다루어 보는 것이었다. 또한 이 후보생이 언제나 책망할 것 없이 치신하는 가 하는 생활문제도 다루었다.

任命은 교회가 어떤 특정한 候補生을 특별한 목적에 추천하는 파정인데 생활과 교회의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제외되며, 그렇다고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모두가 어떤 직위에 推薦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 중 더러는 어떤 특별직에 추천되어 시 의회의 재가를 받도록 내어 놓으면 "市長과 市의 존귀와 위신을 지킬 충성을 맹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순서를 치른 후에 새 목사가 취임하도록 교회에 제시되는 것이었다.

就任은 案手한 후 교회에서 행하게 된다. 이때에 회중은 반대할 수도 있으며 반대가 있을 때 새로운 선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1541년판이 1561년에 수정됨으로 이 원시교회의 안수식이 상당히 수정되었다. 즉 주께서 그에게 (안수받는 자) 직분을 행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해 기도와 간구와 함께 단순한 선포로서만 취임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 교사(docteur)직은 "건전한 敎理와 신실한 자를 가르칠"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는 교회가 목회자들과 목사들(pasteurs et ministres)이 缺如하지 않기 위해서와 젊은 이가 시민정부(gouvernement civil)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541년판과 1561년판이 다 같이 교사직에 대한 명칭을 Lorde de escolles라고 하였다.

1541년판에 Lorde de escolles(교수직)의 직위와 의무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는데 두가지 계층이 있다.

하나는 신학의 고등교육과에 종사하는 "목사직과 가까운 직위" (a ronk

close to the ministry)와 다른 하나는 남자 젊은이만을 위한 ‘언어와 인문과학’을 위한 보통교육에 중사하는 계층이 있다. 이때에 “les filles avert levr escolles a part, comme il a este facit par cydevant”에 근거 하여 여성들을 위한 교육도 있었다고 하나 그렇게 확실한 그 당시 추세는 아니었다. 그리고 전자의 교수에게 대한 호칭은 “lecture de théologie”라고 되어 있고 후자의 교수에 대해서는 “bachelier”라고 하고 있다.

이 양계층의 교사들의 임명은 목사들의 추천과 찬성으로 이루어지고 다음에 petit conseil의 두理事들이 참석하여 시험을 치른 후 이사회에서 원을 함으로 되어진다. 이 교사들은 목사들에게서와 같이 교회권징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교사회는 비록 市政의 관심이 수반되기는 하더라도 교회조직에 보다 더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1561년 판에서는 1541년판을 如字的으로 대략 답습하면서 두 계층의 교사들에 前의 말을 사용하면서 docteur를 하나의 교회봉사직으로 간주하게 되어졌다.

세째로 그의 1559년에 나온 제네바학원을 위한 교칙<sup>8)</sup>에서 그의 교사직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 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빈의 일생을 통해 판을 거듭한 기독교 강요와 또한 그의 성경주석들에서 교사직에 대한 신학적 기반이 놓여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그의 사상 추적을 위해서라도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준 스트라스버그의 생활을 살펴봄이 좋겠다.

#### IV. 칼빈의 교사직에 대한 스트라스버그에서의 영향(1538-1541)

칼빈은 스트라스버그에서 처음에 프랑크 피난민教會의 목사였고 후에 스트라스버그학교의 강사로서 지냈는데 스트라스버그 생활 이전에 칼빈이 Docteur職을 하나의 별개의 직책으로 생각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앞

8) *Leges Academia Geneveusis*, 불어판, 1561년과 1562년판이 있다.

에 말한 1537년의 Articles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敎회의 요리문답 교사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종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父母들과 一般學校에 두었다. 학교 직원에 대한 자격이며 동일기관의 직책자들이며 목사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sup>9)</sup> 아 물론 그가 목회하고 주석한 스트라스버그 생활이 칼빈으로 하여금 교회 공공 봉사직에 대한 性格을 결정적으로 파악한데 이른것 같다. 스트라스버그 이전에는 종합적인 봉사직(collegialitstisch)에 대해서 생각한 것 같지 않다. 스트라스버그에서 하나의 종합적 교회 봉사직을 생각하게 된 것으로 보아 지는 그럴 만한 증거들을 Francois Wendel 교수가 1533년의 스트라스버그會議 以前 및 그 기간동안의 문서를 연구한 바 있어<sup>10)</sup> 이 연구 결과에 의존한 것이다.

그의 주장은 이러하다 :

1531년 10월 30일 스트라스버그가 인정한 학교제도가 있는데 다양한 사회적 교회적 배경을 가진자들이 강사로 수교하였다. 부처(Bucer)와 그 동료자들이 이 기관에 “수고한 선생들이 작문과 예술에 덧붙여 기독교 권징과 하나님 敬愛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1532년 11월 30일 총회소집 요구에서 목사들이 7항목을 총회에서 討論할 것을 제의 하는 가운데 그 중 두 가지는 敎育 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다른 두 가지는 敎會政治와 敎會奉仕의 性格을 다루는 것이었다. 1533년 6월 3일에 총회가 모이자 敎師들에 대한 검토 평가에서 학교행정, 성격에 대하여 市議會와 다찰이 생겼다. 예컨대 Bucer는 교수, 강사, 선생, 교장을 敎會의 교사로 간주하려고 하는데 反하여 市議會에서는 교사들이 敎會 일로 일어나는 것에만 교회적인 일로 간주하고 모이도록 했다. (so es auch die notturfft erforderet mögen sie die ordinarios Lectores Schül unn leermeyster sampt und sonder wie sie das für nutz und gut ansihet zu ihnen

9) *Joannis, Calvini opera quas supersunt omnia* (CO Xa : 12).

10) *L'Eglise de Strasbourg; Sa Constitution et son organization*, 1532-1535; (Paris, 1942)

berüffen)

이런 차제에 1538년에 칼빈이 스트라스버그에 도착하여 교회 교육문제에 개입하여 改革主義的 목회에 대해 연합적인(collegiate) 성격을 형성하였다. 개혁주의적 교사직이 假定되면서부터 교회일로서 교육세계의 운박이 잡혀진 것이다. 이렇게 된때는 Martin Bucer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Bucer는 스트라스버그 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면서 1536년 로마서 12장을 주석하기를 “교회의 공공봉사자, 교사, 목사, 다스리는 자 그리고 집사 이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공동체의 한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쓰고 있다. 칼빈은 이때에 이 學校의 한 고등반에서 市民들을 가르치는 시간제 강사로 고용되었다. (1539—1541) 이런 경험적 기능에 기초하여 칼빈은 목사직과 교사직과의 구분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스트라스버그에서 그가 쓴 “사도레트에 대한 답변”이란 글에서 그 교회(제비바)에서 나는 처음에는 교사직<sup>11)</sup> 그 다음에는 목사직<sup>12)</sup>을 가졌다.”고 하고 있다.<sup>13)</sup> 이렇게 칼빈이 구분지어서 말하는 데는 3가지 의미가 있는 줄 안다.

즉 1) 칼빈은 교사직을 교회봉사직의 일환으로 간주한다는 점 2) 교사직은 牧師職과는 구분된 것으로 보는 점, (3) 이 교사직을 學的分야에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본다. 그래서 그가 스트라스버그에서 제비바로 돌아와서 行한 첫 시도는 市議會에 제출하여 하나의 조직적 종합봉사(Multiple Ministry)를 구성하게 한 제비바교회를 위한 결정적인 政策을 제시하였다.

## V.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사직에 대한 견해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의 판을 거듭할수록 그의 교사직에 대한 생각이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541년 Ordonnance Ecclesiastiques가 나온 해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

11) 1536년 7월 24일 신학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제비바 의회에서 인정되었다.

12) 아마 1936년 9월 5일

13) J.K.S. Reid, *Calvin Theological Treatise*, Westminster Press, 1954, p. 222.

라틴어 판에 (1536년과 1539년) 기초하여 불어판을 출판하였다.<sup>14)</sup>

이 불어판에서 完全히 教會조직이 구성된 것이 아니고 중세 교회 체제를 성격적 개혁정신에 근거하여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향이 教會의 봉사직에 대한 그의 思想에서는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장로, 집사, 교사직들이 언급되기는 하나 그 職分들에 대한 性格 問題는 미미하며 擧論되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다. 심지어 목사직에 대해서도(ministre de la parole) 칼빈은 오히려 적극적 方法으로 그 기능을 제시하기 보다는 中世的 개념에서 구별하려고 하는데 苦心하고 있다. 중세적인 술어 ancien을 pasteur와 같은 동의어로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1541년 이 불어판 강요에서 칼빈은 두번이나 교사(docteur)란 명칭을 사용할 때 어떤 특수직을 열두에 두고 쓴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말은 XV장 De la puissance ecclésiastique에서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은사들과 慰勞者에 대한 것을 거론하는 가운데 이 약속들이 전체적 교회유기체(à toute l'Eglise ensemble)에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면서 이런 증거로서 “교회교사”(Docteurs de l'Eglise)를 말한다. 이 교사로 임명된 자들은, 그들이 소유하는 은사와 함께(그리스도의 은혜의) 훌륭한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조금 후에 또한 칼빈이 “교사들과 목사들”(Docteurs et de Pasteurs)을 구분하는 데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으로 봐 교사와 목사를 어떤 직책상으로 구분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구분없이 기능적면에서 말하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1541년 불어판에서 그 기능을 구분한 듯 하지만 교사직을 어떤 특별한 봉사직으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그의 사상은 제단 교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장로직, 집사직, 심지어 목사직에 대해서도 어떤 특수직을 생각한 것 같지 않다. 칼빈이 주장하는 대로 목사직(the whole postoral office)을 전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자로 본다. 이를 총성되어 하지 않는 자는 선지자이든 감독이든 교사든 간에 그 職分

14) Jean Calvin,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estienne teste établiet presente par Jacques Pannier* 4 Tomes (Paris, 1536—1539.)

에 있어서 반역자들이며 불성실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볼 수 있다. 그러나 1941년 판에 누구든지 그 기능면에서만 보았지 직능면에서 본 것 같지 않다.

1541년판의 엠 4:11의 귀절에서도 칼빈은 교회 안에 임시직과 항존직등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분은 1543년판에서 신약의 사도, 선지자, 전도자의 직들은 임시적 性格을 가졌다고 보고 목사와 교사는 항존적 교회직이라고 선언했다.<sup>15)</sup> 그리고 교사직은 목사직책과 함께 성경귀절등에서 확립되고 있다.<sup>16)</sup>

칼빈은 목사와 교사를 구분하면서 “교사들은 권징을 행치 않고 성례를 행치 않고 권고나 勸勵를 행치 않으며 오히려 건전한 합당한 敎理가 신실한 자들 가운데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한다.<sup>17)</sup> 목사와 교사직에 대한 봉사직으로서의 구조와 정의는 1559년 판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기독교강요 iv:iii:2,3,5에서 칼빈은 목사, 교사 집사 취임식 때 原始敎會가 행한 안수식을 말하는 데 이 때에 1543년 판 Sic pastores et doctores, sic diaconas consecrabant란 말을 如字的으로 취해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1543년 판과 1559년 판에 여차적 일치점을 찾기보다는 그의 구조와 생각들에서 일치성을 찾음이 타당하다.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은 1541년의 Ordonnances Ecclésiastique(敎會政治)와 1543년판의 基督敎 講要와 비교해 볼 때 기독교 강요에 따르면 교사 자신은 예배적 권징의 문제에서는 제거되고 있으며, 敎會政治에서는 교사는 敎理의 學的 탐구에서 그 기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네바 아

15) Co. 1:562-564.

16) Co. 1:564 sec. 39. “Quam enim similitudinem habeant nostri doctores cum veteribus prophetes, ean habeant cum apostdis pastores”

17) Co. 1:564, sec. 38. Sequuntur pastores ac doctores, quibus carere nunquam potest ecclesia; inter quos hoc discriminis esse puto, quod doctores, nec disciplinae, nec sacra mentorum administrationi, nec monitionibus aut exhortationibus praesunt, sed scripturae tantum interpretationi, ut sincera sanaque doctrina inter fideles retineatur…… Pastorale autem munus haco omnia in se continet”.

카데미에서는 그 실현이 나타난다.

## Ⅶ. 교사직과 제네바 학원

1542년 초에 제네바 시민들이며 또한 외국인들이 신임할만 하고, 완전한 학적 생활을 할 수 있는 학원을 市議會가 설립할 것을 칼빈은 제안했다. 이때에는 아직 시기 상조였기는 하지만 칼빈이 대학의 학적 곤핍을 절감한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그 당시의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심지어 칼빈 자신이 행한 신학강의의 수준도 보통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되는 바이다. 그러나 칼빈은 고등교육에 대한 집념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덕진 노력끝에 1552년 시 의회는 학적 연구를 위한 대지를 마련하였다. 16C의 재정조달이란 요즈음 이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1558년 시의회가 결국 이 기관을 재조직하려고 할 때 칼빈 자신은 처음부터 훌륭한 교수진 확보와 더불어 자금 조달을 위해 가가호호방문을 하였다. 결국은 1559년 6월 5일 Leges Academiae Genevensis가 쾰 피터 교회당에서 모인 첫 집회에서 공적으로 학원설립이 공포되었다.

이 학교의 교칙들이 목사들에 의하여 작성되어 Bezé를 학장으로 임명함과 함께 市議會에다 재가를 받으려 했다. 이 당시에는 교수가 5명, 강사가 7명, 그리고 음악선생으로 시작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학교에 두 부분이 있어 그들의 관계가 어떠 했다는 점이다.

교칙의 라틴어판 서문에서는 Academia (학원)이라는 큰 테두리안에 schola publica와 schola privata로 나타나고 이 전체기관의 가르치는 staff를 교사들(doctores)이라고 했다. 그런데 프랑스판은(1561과 1562) L'Ordre du Collège de Geneve라는 표제하에서 한 곳에서는 “젊은이를 위한 대학(collège)”과 “大 公衆學校”와 구분을 지운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전체기관을 “종합대학과 단과대학”(the university and collège)이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text는 두 가지 종류의 faculties를 말한다. —“Masters and Regents of classes”와 “Public Lecturers and Professors”로 나눈다.

이 학교 교칙은 collège 교사와 공중학교 교사와의 분명한 구분이 있었다. 한 가지 예로 regents는 rector에게 뿐만 아니라 하급기관을 특별히 보살피는 principal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었다. 반대로 principal은 rector의 직속관리하에 있었는데 rector는 2년마다 Compagnie des Ministres et Professeurs의 회원들에서 갱신되었다. 양쪽 교수들은 처음에 Compagnie에 의해 추천되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 의해 재가되었어도 금요일 집회와 목사모임에 참석해야만 했던 교수들은 공중교수들이었다. 이 모임에는 regents나 principal이 참석해야 한다는 규칙은 있다.

학문의 새로운 기초를 시작하는 취임연설에서 Béze는 원시교회와 중세 또한 개혁교회들이 학문의 보존에 소홀히 해왔던 것을 지적하였다. Béze는 모세를 족장이라고 하였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나타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 “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철저히 배웠기 때문이었다” 이 제네바 학원의 헬라철학—이것은 애굽에서 왔다고 생각되었는데—의 유산물이 새로운 rector인 Béze의 연설에서 엿볼 수 있다. 또한 그가 사용한 역사적 정경적 판단 외에도 그의 사상적 기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학교를 국가의 소산품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반면 Béze가 연설을 마친 후 Calvin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짧은 연설을 하였다.<sup>18)</sup> 여기서 칼빈은 무엇보다도 청중에게, 社會에 이 학원의 성공적 학구수행을 함에는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끝으로 이 업적에 모험적 수고를 했던 시위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한 후에 결론을 맺었다. 이 감사에서도 칼빈은 시위원들이 “그들 職에 사려깊은” “doctores의 책임을 수행하는 神意를 다할 것을 암시했다.

18) 지금 칼빈 자신이 행한 연설 본문은 없으나 칼빈 연설을 보고한 내용은 있다. Co Xxii 546—547.

이렇게 볼때 이 양자의 대조는 짐작되어지고 시정부에 기초를 둔 자의 입장이 학문에서 교사직을 교회봉사로 보는 깊은 해석이 나와 지지는 아니했을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561년도 판 교회 Ordinnances는 1541년도 판을 거의 여자직으로 따르면서 문제의 3問單의 말, 즉 학원의 가르치는 교수들 敎會奉仕職들의 규율에 종속시키는 말은 삭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1559년의 Leges Academiae교칙, 즉 공중교수들로 선택된 者들을 爲한 서원 표준의 말이<sup>19)</sup> 아주 일반적으로 표시되면서 다른 문서에 참조하라고 하는 식으로 얼버무린다. 이런 경향으로 칼빈은 학원의 교수직을 교회봉사직과의 연관시키지 않으며, 시정의 간섭을 배려한 조침인 줄 안다. 가르치는 직에 대이로써 칼빈은 해 분명한 선을 보여 주지 않으면서 교회의 중요한 일익과 社會 사명으로 보는 것 같다.

1559년의 Leges Academiae는 1541년판 Ordonnances Ecclesiastique의 규칙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1561년판의 Ordonnances의 개혁판은 제네바 학원의 교수직을 敎會奉仕에 실제로 연관시키는 그 대목을 삭제한 것이 된다.

## VII. 제네바 교회의 교수들

Leges Academiae에 따르면 공중학교의 교수들은 시내 목사들과 금요일 모임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다. 제네바 학원의 설립당시에는 두 개의 금요일 모임이 있었다.<sup>20)</sup> 아침모임은, 목사들 중 한 사람의 설교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었고, 이때의 모임은 목사와 평신도가 다같이 모였으며, 1559년경에

19) 서원의 본문은(Co X : 89) 다음과 같다.

교수들과 Regent들을 위한 서원

“나는 내게 맡겨진 의무, 곧 보통 또는 상급반 학생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규칙과 우리 市議員들과 상판들이 내게 요구한 바의 교과들을 가르치는 의무를 신실히 할것을 약속하고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주시실것을 기도하면서—학생들이 모든 방정과 정직으로 평화롭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과 시의 안녕과 고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제네바 당회 (consistory) 란모임은 시내 목사들과 시의회에 의해 선출된 anciens과 compagnie 함께 모이는 것이었다.

이 모임이 “교회”라는 명칭으로 불리었다. 이 교회 모임 후에 목사들은 함께 물러가서 모여서는 설교를 평가하고, 試驗이며, 교역후보성을 세우는 일, 회원들의 교리, 태도 修正, 일반 교회행정, 업무를 다루는 일이었다. 이러한 매주 금요일 모임의 배태는 1541년판의 *Ordonnances Ecclesiastiques*에서 發見되어 진다고 한다.<sup>21)</sup>

그러나 이 구체적인 모임에 대한 언급은 1546년 11월 4일 금요일부터이다. 그때 목사와 교수들의 모임에서 제네바 학원의 가르침과 행정에 대한 것들이 의논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18C말까지 이른다. 이 아카데미 교수들과 제네바교회 목사들과의 밀접한 관련이 제네바학원의 공중교수들을 교회의 제 2봉사직으로 칼빈은 본 데서 알 수 있다.

이 제네바학원의 첫 20여년간은 교수들 중 9명은 제네바로 오기 이전에 벌써 개혁교회들의 목사들이었고 또는 제네바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Calvin, Béze, Antoine, Roul Chevalier, Claude Baduel, Nicolas Colladen, Conreille Bertram, Charles Perrot, Lambert Daneau, Antoine Dela Foye 등이었다. 철학을 가르쳤던 Baduel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들은 제네바 학교의 신학과 히브리어 교수들이었다.

그런데 R. W. Henderson의 연구에 의하면 헬라어와 철학교수들이 목사들에게서 증당되지는 않았다(Baduel을 제외하고는)고 한다. 목사가 아닌 공중학교의 교수들은 *Compagnie*의 회원으로써 위에서 말한 교회의 일들을 다루었는데 이들 회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status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그들의 직위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학교에서의 그들의 직위가 교회 공중봉사의 위치로 보아졌다는 것이었다. 이런 직위로 교수들은 목사들과 다른 교수들과 함께 교회 기능자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다<sup>22)</sup>, 적어도 제네바 학원의 철학주임 교수는 교회 교수의 자리로 와서서 목사모임 *compagnie*의 일원으로 일했다고 한다.<sup>23)</sup>

우리는 지금까지 칼빈의 교회안에서 교사직에 대한 편력을 살펴보았다.

21) A. Bourrier, *La Compagnie de Pasteurs de Genève*, (Genève, 1878 p. 4.)

22) R. M. Kingdon, *Geneva and the France 1555-1563*, Geneva, 1956.

23) Teaching office in Reformed Tradition, Philadelphia, 1962 pp. 65-71.

본 논고에서는 지면상 칼빈 이전의 중세 교사직에 대한 이해는 살피지 못했다. 그러나 칼빈 이전의 보통 교육기관은 시정당국들의 손에 있었으므로 그 가르치는 교사직은 교회기관보다 당국과의 관계에 의존되어 있었다. 이 중에 학교의 종교 교육은 좋은 태도, 덕, 지식을 얻는데 목적이 있었다.

칼빈이 스트라스버그로 오기 이전의 이 시의 교육행정에 市政과 敎會당국자들 사이에 가르치는 일이 교회기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마찰이 있을 후 칼빈은 교수직을 하나의 교회일로 보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시정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교회의 *collegiate*의 관점에서 *Multiple ministry*에 대한 관심을 확립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칼빈의 교수직에 대한 그의 神學的 기초를 살펴 보고자 한다.

#### Ⅷ. 교회안의 교수직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기초

칼빈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과 교회의 가르치는 직과 연관을 시켰다는 것은 자명하게 나타난다. 기독교 강요 II : XV : 1-2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충분한 “유용한 가르침”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선지자적 계승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II : XV : 2절에서는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직에 있어서, 비슷한 직책을 갖고 있는 다른 교사들(즉 율법하의 선지자들)과 구별된다고 하면서 여기서 주목한 사실은 그리스도가 자신이 곧 교사의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전체 몸 된 교회가 말씀의 전파를,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성육되었다고 하고 있다.

칼빈이 그리스도의 3직(*manus triplex*)—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의 기독교 강요 1539년판이다. (1536년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이 3직에 성육됨은 곧 그리스도의 백성이 영적 의미에서 성육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백성들 중에 더러는 특별히 그리스도 자신에 위임된 임무직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성육의 의미는 단지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유일 참된 그리스도의 성육에 대한 비의적 의미(Sacramentum)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가르치는 직을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직을 나타내는 신비적 일이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직에 성육되었다고 함이 율법하의 선지자직이 복음 시대의 가르치는 직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구약 시대의 제사장직이 복음시대의 사도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과 같다. “우리의 목자들이 사도직에 상응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교사들도 고대 선지자들에 상응한다.”고 칼빈은 말한다.<sup>24)</sup>

그러면 칼빈이 이해한 교사직은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의 구약 선지자직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두가지 뜻으로 구약 선지자들을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눅 24 : 27에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다. “언약 기억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영적 예배를 분명히 지적하며, 중보자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여 화해의 방법을 더욱 분명히 보여 주는 것 외 다른 직책이 그들에게 보여지지 아니했다함으로 여기서도 “안내자”의 뜻이 강하다. 이 외에도 선지자를 율법의 “해석자”요(행 7 : 37), 복음교리를 “뿌리는 자”(거두는 자가 아니다 요 4 : 36)로 본다. 교사의 가르치는 내용 (docendi forma)은 그리스도이다(행 10 : 43) 다시 말하면 구약 선지자는 교훈직을 수행하고 그들의 교리는 모세의 가르침에 기초 하였다. 모세야말로 최고 선생(Summus doctor)이라고 칼빈은 부른다.(행 9 : 22), 둘째 선지자란 의미는 “미래사건을 예언하는 자”(quibus res futuras praedicece 행 15 : 32)를 선지자로 본다. 그렇지만 칼빈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이 예언의 역할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단 선지자 역할을 말하므로 예언자의 의미를 부각시키지 않는다. 이 예언의 기능이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끝났다고 율법에 대한 해석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칼빈은 교사(doctor)란 명칭을 유대인 서기관에게 적용시키며

24) 기장 IV : III : 5

ecclesiae doctores의 공증교사들에게도 적용시키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서기관들이 그들의 소명을 오용하고 잘못되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법적 부르심 곧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즉 가르친다)는 이 사실마저 무로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마 23 : 1-12).

칼빈은 그리스도의 중요 직책을 사제적 역할에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의 양을 주로 생각하지만(요 1 : 9) 그렇다고 법적 또는 선지적 역할을 회생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사역시초에 성전 청결사건을 두고 칼빈은 주석하기를 “이로써 그리스도는 자신을 교사(doctor)와 선지자(propheta)로 알려졌다.”고 한다. (민 21 : 10-22) 그리스도의 사업을 논함에 칼빈은 강조하는 의미에서 위에 말한 칭호들을 사용한다. (마 22 : 16, 막 12 : 14, 눅 20 : 21, 요 1 : 38, 요 7 : 40, 행 1 : 1) 사도행전 7 : 37의 주석에서 그리스도는 지혜(Sapientia)의 완전무결이며 따라서 만민을 위한 으뜸 선생으로 행동했고 하나님에 의해 설립된 선지적 역할로 유대인의 선생(magister)이 되었다고 한다.

칼빈이 롬 12 : 6-8을 취급하면서 그리스도사역으로 고대의 모든 예언들과 하나님의 모든 신탁들이 마쳐졌다고 하면서 복음시대의 선지자 명칭은 “특별한 계시 은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해석자의 직무(munus)를 수행하는” 자들에게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며 또한 이 귀절에서 “교사(doctor)란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형성하여(format) 세우는 자(institutit)라고 한다. 그러므로서 신약시대의 선지자와 예언의 행동은 분명히 교훈적 기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귀절중 선지적 과 예언의 기능이 나타나는 귀절들에서 칼빈은 복음시대의 선지적 기능의 교훈적 면을 강조하면서 예언적 기능의 우월성을 거절한다(행 13 : 1, 15 : 32, 21 : 9-10)

아가보라 빌립의 4말들이 분명히 예언의 은사를 받아 예언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칼빈은 새 시대의 교회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서 예언적 요소를 인정하는 정도로 하여 일버무린다(롬 17 : 7)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뇌에 멍든 자들의 예언은 교회가 이 은사를 박탈당한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위협스런 국면을 피력하였다(행 9-10)

결론적으로 칼빈에게는 교사(doctor)적과 선지적이 복음시대에 매우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칼빈은 이 양자간의 선명한 구분을 짓지 못했다. 분명히 이 양자간에 차이를 마음에 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행 14:1에 “안디옥교회에 어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말씀에 칼빈은 독자들에게 자기 주석 앱 4:11과 고전 12:2을 참조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나의 판단으로는 교사들(doctors)과 선지자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아마 그 차이점은 교훈적 기능을 행사하는데 그 강조점이 있는 것 같다. 복음시대의 선지자는 더 넓은 의미에서 빈틈 없이 기본적으로 예언들이고 위협들이며 성경의 전 교리를 교회의 현실(實情)의 사용에 적용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고, 가르치는 직(doctrum munus)은 완전한 교리가 유지되고 선전되어 종교의 순수성이 교회 안에 지켜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데 있다.”고 칼빈은 언급한다(고전 12:28).

그런고로 칼빈에 있어서 복음시대의 선지적 교사직은 사도적 목사직과는 다르다. 이 교사직은 자신의 선지적 교사직에 근거하여서, 사도적 목사직이 예배, 목양, 행정을 하는 것과는 달리, 교훈적 비평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모든 목사는 교사일 수 있지만 모든 교사라고 해서 직책상 한 목사가 될 수 없다.

앱 4:11을 칼빈은 해석 하면서, “牧師들의 福音을 맡아보는 교사들과 전체 교회의 가르침을 돌보는 교사들과 구별된 班이 있음을 알인데 목자들(pasteur)이 교사(doctores)란 명칭을 얻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 農漁村 福音化를 爲한 醫療傳道의 要請

李 容 浩

(부산 松島 第一教會 牧師)

- |                  |                  |
|------------------|------------------|
| I. 의료전도의 정의와 필요성 | IV. 의료전도의 중심적 문제 |
| II. 의료전도단 구성     | V. 의료전도의 유익      |
| III. 의료전도지 선택    | VI. 의료전도의 실제     |
|                  | VII. 제언          |

### I. 醫療傳道의 定義와 心要性

#### 1. 定義

의료전도(medical evangelism)는 특수전도라고 할 수 있다. 의료의 기능을 사용하는 전도의 한 형태이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질병이 있어 왔고 또 질병이 있는 곳에는 치료가 필요했다.

성경에 치료란 용어는 창세기에 처음 나타난다.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언급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잔케 하셨으니<sup>1)</sup>라고 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은 인간의 약함과 병듦과 영적죽음을 치료하신 예표가 그 전에 나타났<sup>2)</sup>.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인데<sup>3)</sup> 그것이 최초의 영과 육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의료시혜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를 치료하신다.

1) 창 20:17.

2) 최현봉, 선교사적으로 본 인간치료(원목 1977) 참조.

3) 창 3:21.